

#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중 개정 규정

## 1. 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

가. 기금운용심의회 설치에 관한 「사립학교법」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운용심의회  
위원의 수를 7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변경함 (제5조제1항)

나. 「사립학교법」 및 「사립학교법 시행령」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촉 위원  
의 구성 및 인원을 변경하고, 상위법 인용 조문의 개정  
에 따라 인용 조문 번호를 변경함 (제5조제2항)

변경 전	변경 후
회계 또는 재무 관련 교내 및 교외 전문가, 교외전문가는 1인 이상	교원, 직원, 학생, 교외 전문가,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, 교원, 직원, 학생은 각각 2인 이상, 교외전문가는 1인 이상

## 2. 개정 규정

기금운용심의회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7인”을 “15인”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회계 또는 재무 관련 교내 및 교외 전문가”를 “교원, 직원, 학생, 교  
외 전문가,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”으로 하고, “3인”을 “11인”  
으로 하며, 단서 중 “단,”을 “다만, 교원, 직원 및 학생은 각각 2명 이상, 교외 전문  
가는 1명 이상 포함하고,”로 하고, “제14조의5제4항”을 “제14조의6제4항”으로 한다.

부 칙(2023. 1. 26. 개정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중 개정 규정 신·구조문 대비표

구	신	개정사유및내용
<p>제5조(구성)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<u>7인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심의회는 총장, 기획처장, 대외협력처장, 학교법인 이화학당 사무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<u>회계 또는 재무 관련 교내 및 교외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3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 위원으로 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. 단, 교외 전문가는 「사립학교법 시행령」 제14조의5제4항에 명시된 자격을 충족하는 자로 한다.</u></p> <p>③~⑤ (생략)</p>	<p>제5조(구성) ① .....<u>15인</u>.....</p> <p>② ..... ..... .....<u>교원, 직원, 학생, 교외 전문가,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</u>..... .....<u>11인</u>..... .....<u>다만, 교원, 직원 및 학생은 각각 2명 이상, 교외 전문가는 1명 이상 포함하고,</u>..... .....<u>제14조의6제4항</u>.....</p> <p>③~⑤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(2023. 1. 26. 개정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	<p>*위원 수 변경</p> <p>*위원 구성 변경</p> <p>*상위법 인용 조문 번호 변경 반영</p>